6 · 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구자근 • 권영세

강승규・조지연・김장겸

임이자 · 김예지 · 이종배
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6·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·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·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.

특히, 국토의 90%가 점령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는 소년소녀병이 집중 투입되어 조국 수호를 위해 헌 신하였음.

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소년병 중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군에 재입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됨.

이에 6·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6·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징집되어 참전한 자를 소년소녀병으로, 소년소녀병 중에서 6·25전쟁이 끝난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시 징집된 사람을 이중징집자로 정의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.
- 나.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둠(안제3조).
- 다.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, 이중징집 자에게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년소녀병등 또는 그 유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, 결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- 바.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사.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(안 제19조).
- 아. 소년소녀병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

는 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(안 제20조).

6 · 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6·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 이중징집된 자 및 그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소년소녀병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(징집 당시 기준)의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이중징집자"란 소년소녀병 중에서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징집된 사람을 말한다.
 - 3. "유족"이란 소년소녀병 또는 이중징집자의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 상속인을 말한다.
- 제3조(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) ①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(이하 "소년소녀병등"이라 한다)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소년소녀병등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
 - 2. 소년소녀병등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

- 3.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-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보상금) ①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추가 보상금) 이중징집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제4조에 따른 보 상금 외에 이중징집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·육체적 고통과 피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로 지 급할 수 있다.
- 제6조(유족의 권리) 유족은 위원회가 소년소녀병등이 사망한 당시의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제7조(보상금의 지급신청) ① 소년소녀병등과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

- 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신청의 각하)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
 - 1. 이미 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
 - 2.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
 - 3. 지급신청 이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
- 제9조(지급결정)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결정서의 송달) ①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1조(재심의)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8조,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.
- 제12조(보상금의 지급 등) 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보상금에 대한 권리보호)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- 제14조(조세의 면제) 보상금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결정전치주의 등)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. 보상금 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(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)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지급결정 동의의 효력)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제17조(보상금의 환수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

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
- 2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
- 제18조(사실조사 등)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소년소 녀병등,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관계 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② 누구든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비병역징집 및 이중징집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, 그 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- 제19조(소멸시효)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제20조(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) 소년소녀병등이 「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5조에 따른 추가보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

- 을 산정하여야 한다.
- 제21조(벌칙)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 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22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소년소녀병등의 인정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 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 으로 본다.